

대한물리의학회 투고 규정

2008년 5월 1일 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 I. 본지는 대한물리의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논문, 종설 및 임상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II. 원고투고자격은 모든 저자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III. 저자는 투고 시 반드시 저자 점검표를 작성 후 원고와 함께 투고한다.
 - 실험 연구(Clinical trial / Experimental study) : CONSORT Compliant
<http://www.consort-statement.org/>
 - 관찰 연구(Observational study)
(횡단면조사(Cross-sectional study),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 STROBE Compliant
<https://www.strobe-statement.org/>
 - 종설 연구 및 메타 분석(System Review and Meta-Analysis) : PRISMA Compliant
<http://www.prisma-statement.org/>
 - 사례 연구(Clinical Case Report) : CARE Compliant
<http://www.care-statement.org/>
- IV. 본회에 제출된 원고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결과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저자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V. 원고의 심사 및 게재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3인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 일자, 권, 호,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대한물리의학회지는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간행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부록 등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VI. 원고의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제출된 모든 원고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3인(심사위원 2인, 편집위원 1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사(peer review)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편집인이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인의 게재, 게재불가, 또는 원고의 수정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통지된다. 최종 수정된 원고가 본 학술지의 출판양식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면 게재가 결정되고 발행시기가 예정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VII. 제출된 원고형식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원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원고

- 원고는 MS word를 사용하여 선 및 단락간격 1.5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논문의 전체 페이지 수는 편집용지 기준으로 13장 이내로 한다. 편집용지
- 편집용지 종류 : A4

VIII. 내용편집

1. 논문제목(한글 및 영문), 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줄을 바꾸어 작성하고 글꼴은 맑은고딕, 선 및 단락간격 1.5로 작성한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MS word의 기본값으로 정한다.

2. 논문제목

- 글꼴 및 문단 모양 : 크기(10pt), 글꼴(굵게), 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0)
- 부제를 함께 서술할 경우, 본제의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부제를 기술한다.
- 영문제목의 글자와 문단모양은 한글제목의 표기와 동일하며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단, 부제를 함께 서술할 경우, 본제의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시한다.

3.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

- 저자명과 저자의 소속기관은 논문에 표시하지 않고 웹 투고 절차에 따라 직접 입력한다.
- 게재 확정이 되면 논문에 저자명과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기하여(양식에 의거) 최종 논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업로드 한다.
- 웹 투고 입력 시 교신저자 여부에 대해 표시한다 (입력란이 별도로 존재함).

4. 초록

- 한글원고와 영문원고 모두 영문 초록을 작성한다.
- 초록은 총 200-25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① 크기(10 pt), 글꼴(맑은고딕), 글꼴(보통), 정렬

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 ②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네 항목을 「글꼴(굵게)」으로 표기하고, 각 항목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내용은 「글꼴(보통)」으로 기술한다.
 - ③ 각 항목은 줄을 바꾸어 작성한다(Enter 친 후 다음 항목을 작성한다).
 - ④ 초록의 단어 수는 문장을 드래그하면 왼쪽 하단에 단어 수 확인이 가능하다.
- 영문초록에 Key Words는 3개 이상의 단어를 쉼표(,)로 구분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① Key Words는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로 작성한다.
 - ② 예) Key Words: Stroke, Electrical stimulation, Motor recovery, Motor function
 - 초록과 Key Words는 웹 투고 시에도 입력해야 하며 영문초록과 영문 Key Words만 입력한다.

5. 본문

- 본문은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서론(연구의 목적 포함), 연구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배열한다
- 글자모양, 문단모양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정렬), 들여쓰기(첫줄 1글자)
- 본문의 단계별 번호는 I,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 ① I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 ② 1.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 ③ 이하 번호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 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에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글단어 끝에 원어를 괄호 속에 묶어 기술하고(단어와 괄호는 띄우지 않음), 원어는 본문의 첫째 단어에만 사용하고 이후 본문의 동일한 단어에는 생략한다.

- 연구방법에서는 성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용어 사용은 명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sex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인자를 기술할 때 사용하며, gender라는 용어는 신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sex라는 용어와 gender라는 용어를 인간 연구대상자에게 혼용하거나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sex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sex나 gender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즉, 연구의 제외 기준에 따라서 한쪽 성에서만 치우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저자는 왜 이러한 제외 기준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전립선 암). 또한, 저자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함을 밝혀야 한다.
- 연구에 사용된 장비의 설명은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측정장비명[영문], 제조회사[영문], 국가[영문] 예) BALANCE PAD (BALANCE PAD, AIREX, Switzerland)
- 연구방법에서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동의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동물실험은 제외).
-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6. 표와 그림

- 표는 반드시 「표 삽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Table 1), (Fig. 1), (Table 1, 2), (Fig. 1, 2), (Table 1)(Fig. 1)
- 국문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다음 표와 그림 내부의 서식에서는 영문 약어의 사용이 가능하며 단, 영문이나 약어에 대한 설명을 표 또는 그림 아래 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 표와 그림의 제목, 약어 그리고 표의 내용은 크기 (10pt), 글꼴(맑은고딕), 꼴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선 및 단락간격 1.0으로 한다.
- 표와 그림의 내용이 본문의 기술내용과 중복 나열되지 않도록 한다.
- 표와 그림에 사용된 약어서술은 표와 그림의 아래쪽에 나열한다.
- 그림은 그레이(gray) 색을 기준으로 하고, 색도 그림을 게재할 경우 추가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그림의 저장형태는 jpg, tiff, gif 등으로 하며 인쇄시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표와 그림에 대한 간략한 영어 설명을 추가 할 수 있다.

7.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 필요한 경우 작성.

8. 참고문헌(reference)

- 참고문헌 제목에는 단계별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의 수는 50개 이하로 제한한다.
- 참고문헌은 영어로만 작성한다.
- 참고문헌 제목은 크기(10pt), 글꼴(맑은고딕), 글꼴(굵게), 정렬방식(가운데)로 한다.
-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순서는 본문의 논문인용 순으로 나열한다.
- 참고문헌의 내용은 크기(10pt), 글꼴(맑은고딕),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첫줄 1글자)으로 작성한다.
-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하고, Index Medicus에 약어명이 없는 경우 원래 학술지명(full name)을 그대로 기술한다.
- 참고문헌의 논문제목 또는 도서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 저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저자와 저자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3인 이상일 경우 3인의 이름 다음 ,(쉼표)를 작성한 후 et al.을 작성한다.
예) Behrman AK, Lawless-Dixon AR, Davis SB, et al.

-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학술지 논문일 경우
 - ①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연도;권(호):인용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순으로 작성.
 - 예) [1] Behrman AK, Lawless-Dixon AR, Davis SB,
et al. Locomotor training progression and
outcomes after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Phys Ther. 2005;85(12):1356-71.
 - ② 학술지 논문 저자의 수가 3명 이하이면 모두 기술
하고, 4명 이상이면 앞에서부터 3명까지 기술
하고 그 후에 「et al.」로 표기한다.
 - ③ 발행연도;권(호):페이지로 작성하며 세미콜론
과 콜론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페이지의 경우
중복된 페이지는 작성하지 않는다.
 - 예) 456-458은 456-8로 작성.
 - 참고문헌이 단행본(책)인 경우. 저자명, 도서명 (출
판수 위첨자 사용/초판은 표시하지 않음),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한다.
 - 예) [2] Kitchen S. Electrotherapy: Evidence-based
practice (11th e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2002.
 - 참고문헌이 단행본(책)의 장(chapter)인 경우.
 - 예) [3] Mark S, Williams T. Review of physical
therapy. In: Johnson HS, Exercise and Physiology:
Incidence of disease.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6.
 - 참고문헌이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위,
소속, 연도 순으로 작성한다. 학위가 석사일 경우
Master's Degree로 박사일 경우 Doctor's Degree로
작성한다.
 - 예) [4] Hwang HS. The effects of visual feedback
training on balance and balance confidence in
patients with stroke. Doctor's Degree. Gachon
University. 2014.
 - 특허: 발명자, 특허명칭. 특허등록(또는 출원) 국
가, 번호, 연도.
 - 예) [5] Lee HS, Park SW, Kim JH : Neck exercise
device, Korea Patent, KR 10-0002118, 2017.
 - 인터넷자료 : 저자, 제목, 서지사항, 자료출처, 자
료검색일. 저자와 서지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생략할 수 있다.
 - 예) [6] Cammeron JK : Titanic, 1998. Qvailable
at <http://www.titantic.com>. Accessed January 1,
2008.
9. 증례 보고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증례 보고는 A4용지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단순한 치료법의 기술에 대한 기록은 증례 보고가
될 수 없으며, 다음 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이어야 한다.
 - ① 희귀한 질환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질환
 - ② 증상이 기존과 현저히 다른 경우
 - ③ 새로운 평가 또는 치료법을 실시한 경우
 - ④ 국내 최초의 보고
 - ⑤ 그 외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 초록: 증례 보고의 초록은 원저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 본문: 증례 보고의 본문은 원저의 형식을 따라 구성
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0. 종설 논문 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종설 논문은 물리치료 분야의 특정 주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며, 편집위원회의 의뢰 혹은
위촉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다.
 - 초록: 종설 논문의 초록은 소항목은 원저와 같은
형식으로 하되, 주제에 따라서,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본문: 원저의 형식을 따라 본문을 구성하되 주제에
따라 항목 배열 순서는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
- 투고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관

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투고 규정의 심사 시 인용된 문헌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IX. 투고 방법

- 대한물리학회 사이트 게시판 자료실 「대한 물리학회 투고안내」에 따라 논문을 투고한다.
- 주소 : http://www.kspm.or.kr/files/kspdata/20150312/1426151285_0.pdf

X.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고 편집위원회의 허락없이 다른 곳에 게재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대한물리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5월 1일 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물리의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4조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 이거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각주에 “김OO의 학위논문 축약본 또는 발췌논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①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 연구

②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③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④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를 말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편집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6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출판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 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8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저자는 국내,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인간 피험자 연구 윤리)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보호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권장 한다.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과 그들의 인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연구 참가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

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때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의뢰를 배제하고 심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윤리위원회)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연구 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 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또는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 외부 위원은 회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추가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투고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장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절차 및 조치)

①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아니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의혹처리 절차

제19조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예비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윤리위원회

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 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①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②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③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본 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 조사는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등을 조사한다.

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

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심사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2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25조 (피조사자에게 통고)

학회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6조 (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피조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27조(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2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 타

제3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

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Manuscript ID _____

Manuscript Title _____

Corresponding Author Name _____

Corresponding Author E-mail _____

The authors of the article hereby agree that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hold the copyright on all materials and the right to publish, transmit, sell and distribute them in the journal or other media.

Signature

The corresponding author signs for and accepts responsibility for releasing this material and transferring copyright on behalf of all co-authors.

Print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____/____

CONFLICT OF INTEREST FORM

Manuscript ID _____

Manuscript Title _____

Corresponding Author Name _____

As an integral part of the online submission process, the corresponding author was required to confirm whether they or co-authors have any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nd to provide details of these. At the point of submission,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policy requires that each author discloses any financial interests or connections, direct or indirect, or other situations that might raise the question of bias in the work reported or the conclusions, implications, or opinions stated.

Author Signed Declarations

Use more forms if needed to add names. By signing this conflict of interest form, each and every undersigned author agrees as follow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have no relevant financial relationships except as follow (please list any possible exceptions below the author name).

Author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 / ____ / ____

Author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 / ____ / ____

Author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 / ____ / ____

Author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 / ____ / ____

Author Name _____ Signed _____ Date (DD/MM/YYYY) ____ / ____ / ____

AUTHOR CHECK LIST

Abstract	
1. In case of an original article, a structured abstract of no less than 200 and no more than 250 words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is attached: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input type="checkbox"/> Yes
2. Key words (3 or more) are provided in the manuscript. These are submitted during the submission process.	<input type="checkbox"/> Yes
Body of Manuscript	
3. The manuscript body should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section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put type="checkbox"/> Yes
4. Ba-Tang should be used to divide the main body in manuscripts (e.g., I, 1, 1), (1), ①).	<input type="checkbox"/> Yes
References	
5. The references (check classification for maximum number) should be numbered and listed in the order cited.	<input type="checkbox"/> Yes
6. Include all authors' names for works with up to three authors, if there are four or more authors, list first three names followed by "et al."	<input type="checkbox"/> Yes
7. References are in the correct style (Recommend use Endnote style).	<input type="checkbox"/> Yes
Figures	
8. JPG, PDF, and GIF files may be submitted for review purposes only.	<input type="checkbox"/> Yes
9. Digital files must be saved at the size authors would like them to appear in print.	<input type="checkbox"/> Yes
10. Keys should be within the confines of the figure or included in the figure legend.	<input type="checkbox"/> Yes
Corresponding author	
11. One author has been designated as the corresponding author with contact details: - E-mail address - Full postal address - Phone numbers	<input type="checkbox"/> Yes

CONFIRM THE FOLLOWING

1. Confirm that the manuscript has been submitted solely to this journal and is not published, in press, or submitted elsewhere.	<input type="checkbox"/> Yes
2. Confirm that the author(s) fully agrees to the Instructions to Authors.	<input type="checkbox"/> Yes
3. Confirm that each author acknowledges that he/she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work in a substantial way and is responsible for the work.	<input type="checkbox"/> Yes
4. Confirm that the author(s) assigns all of the copyrights for the work exclusively to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input type="checkbox"/> Yes
5. Confirm that the manuscript will be on the advance e-pub after the acceptance for publication.	<input type="checkbox"/> Yes
6. Confirm that I have complied with the code of ethic on researches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http://www.kspm.or.kr/sub2/sub202.htm).	<input type="checkbox"/> Yes
7. The present manuscript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